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8. 18 선고 2019가합11570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1. 주식회사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명준

원고보조참가인 1. C

2. D

3. E

원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민

담당변호사 송재원

피 고 1. 주식회사 F

2. 주식회사 G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안

담당변호사 송재순

변 론 종 결 2021. 4. 21.

판 결 선 고 2021. 8. 18.

주 문

1.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예탁유가증권에 관하여 2019. 5. 3. 체결된 (근)질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주식회사 G은 피고 주식회사 F에게 별지 목록 기재 예탁유가증권에 관하여 제1항 기재 (근)질권설정계약에 따라 H 주식회사의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에 한 질권 설정을 마친 질물인 뜻과 질권자의 기재에 대한 말소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그 중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G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G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피고들 사이에 2019. 5. 3. 체결된 질권설정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 1)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라고 한다)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컨설팅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2018. 4. 6. 설립된 회사로, 소외 I이 2018. 5. 28.부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소외 J은 I의 아들로 피고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 2)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와 3인은 2018. 6. 11. 주식회사 K 주주인 J과 사이에,

원고 A 외 3인이 각 500,000,000원씩 합계 2,000,000,000원을 투자하고, J이 ① 2018. 8. 1. 주식회사 L(이하 'L'라고 한다)가 발행하는 제9회차 액면가 2,000,000,000원의 전환사채로 상환하고, ② 2018. 8. 31. 이내에 L 발행예정 액면가 1,000,000,000원의 전환사채로 상환하기로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투자계약'이라 한다).

3) 원고 A은 J이 이 사건 제1투자계약상의 투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자, 2018. 11. 12. 피고 F와의 사이에 J에게 투자한 원고 A을 제외한 3인은 원고 A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피고 F가 J의 원고 A에 대한 투자금 상환의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M공증인합동사무소 2018년 증서 제555호로 '원고 A이 2018. 11. 12. 피고 F에게 3,600,000,000원을 변제기 2019. 1. 31.,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하여 대여하였고, 강제집행의 인낙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라고 한다).

4) 원고 B은 2018. 8. 5. 피고 F와의 사이에, 피고 F가 L에 납입하여야 할 제3자 배정 유상증자금 중 3,000,000,000원을 2018. 8. 6.까지 투자하기로 하고, 3개월의 투자기간 후에 투자금과 30%의 투자수익을 보장받기로 하고, 피고 F가 위 투자금으로 취득하게 되는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제2투자계약'이라 한다), 2018. 8. 6. 2,000,000,000원을 투자하였다.

5) 원고 B은 피고 F가 투자원금과 약정수익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8. 11. 13. 공증인가 N합동법률사무소 2018년 증서 제1442호로 '원고 B이 피고 F에게 2,756,000,000원을 변제기 2019. 2. 7.,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하고, 지연손해금률을 연 24%로 하여 대여하였고, 강제집행 인낙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라고 한다).

나. 피고 F의 이 사건 주식 취득 등

1) L는 2018. 5. 28. 이사회에서 기명식 보통주 1,737,588주를 제3자 배정에 의한 유상증자를 하고, 1년간 전량 보호예수를 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받기로 결의하고, 2018. 8. 5. 피고 F를

제3자 배정대상자로 선정하였다.

2) 피고 F는 O 외 7인으로부터 약 9,800,000,000원을 차입하여 2018. 8. 6. L 발행 기명식 보통주 1,737,588주를 인수하고 9,799,996,320원을 납입하였다. 피고 F는 위 주식을 소외 H 주식회사(이하 'H'라고 한다)에 개설된 자신 명의의 증권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예탁하고, 2018. 8. 22.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의무적으로 보유하기로 정하여 보호예수를 하였다(이하 보호예수 대상 주식 전부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다. 피고 주식회사 G의 금전 대여 및 질권 설정

1) 피고 주식회사 G(이하 '피고 G'이라 한다)은 2019. 5. 3. 피고 F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F에게 3,300,000,000원을 여신기간만료일 2019. 7. 11., 이자율 연 19.9%, 지연배상금률 22.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계약' 또는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2) 같은 날 피고 F는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피고 G에게 채권최고액 6,600,000,000원의 제1순위 근질권을 설정해주는 내용의 근질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질권' 및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이라 한다) 및 주식등 담보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등 담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식등 담보 계약서

본 주식등 담보 계약서는 아래 당사자들 간에 2019년 5월 3일 체결되었다.

채무자 주식회사 F

채권자 주식회사 G

본 계약서(이하 별첨 문서를 포함하며,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서”)는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33억원의 금전을 대출(이하 “본건 대출”) 받기 위하여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서 2019년 5월 3일자로 체결된 여신거래약정 및 그 부수약정서(이하 “여신거래약정 등”)와 관련하여, 발행회사가 발행한 보호예수 중인 주식의 담보 관계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권리 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제1조 본 계약의 전제 및 용어의 정의

④ “발행회사”라 함은 담보 대상주식의 발행회사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주식회사 L[종목코드:P]를 말한다.

⑤ “피담보채무”라 함은 여신거래약정 등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하는 대출원금, 이자, 연체이자, 기한전상환수수료, 법적절차비용, 기타 손해배상채무 등 현재 또는 장래에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 및 그 밖에 채무자, 연대보증인 또는 담보제공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어음대출, 증서대출, 어음할인, 지급보증, 매출채권거래, 신용부금거래 기타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모든 채무를 말한다.

⑥ “대상주식”이라 함은 피담보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본 계약에 따라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채무자 소유의 발행회사 발행의 보호예수 중인 기명식 보통주식 173만 7,588주를 말하며, 본 계약서 제4조에 따라 새로이 취득하는 주식 및 제8조 등에 따라 새로이 제공 받는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제2조 대상 주식의 담보제공 및 담보설정 방법 등

채무자는 피담보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대상주식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한다.

① 채무자가 본 계약 체결로써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보호예수 중인 대상주식(액면가 500원 기준)은 채무자가 2018년 8월 3일 발행회사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여 취득하였고[종목코드: Q, 종목명: L, 보호예수(예탁)번호: R, 보호예수(예탁)사유: 모집(전매제한), 보호예수(예탁)일: 2018년 8월 22일, 보호예수(예탁)주주: F, 사유일: 2018년 8월 22일, 반환가능일: 2019년 8월 22일, 보호예수(예탁)잔량: 1,737,588주], 그 사유일(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량 보호예수가 되었으며, 본 계약 체결일 현재 채무자 명의의 증권계좌(H 주식회사 본점 영업부, (계좌번호 1 생략))에 입고되어 있다.

② 채무자는 본 계약의 체결로써 채권자에게 제1항 기재 보호예수 중인 대상주식 전부에 관한 제1순위 근질권을 설정하면서, i) 전항 기재 증권회사의 투자자계좌부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예탁자계좌부에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질물인 뜻과 채권자를 질권자로 기재하거나 위 증권회사에 대한 대상주식(공유지분) 및 대상주식반환청구권을 채권자에게 양도

하고, ii) 발행회사에 대한 대상주식(주권) 교부(반환)청구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며, 즉시 위 증권회사 및 발행회사로부터 위 근질권 및 양도사실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승낙을 얻는 등 채무자 및 제3자에게 우선변제권이 있는 대항력을 갖추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피고 F는 H에게 질권설정 승낙신청을 하여 2019. 5. 3. 확정일자 있는 승낙을 받고, H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주식의 반환청구권을 피고 G에게 양도하였으며, 이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H에 통지하였다.

4) 한편, 그 무렵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 및 이 사건 주식등 담보계약에 따라 H의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에 이 사건 주식이 질권 설정을 마친 질물인 뜻과 그 질권자로 피고 G이 기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18, 19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증인 J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질권설정의 효력요건 구비 여부 등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질권은 피고 G이 H에 교부한 질권설정승낙신청서 및 H가 교부한 질권설정승낙서에 각 질권설정 종목, 질권설정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무효이고,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설정은 민법 제349조, 제450조 제2항에 따라 확정일자 있는 통지 내지 승낙이 필요하나 이를 결여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피담보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 G이 2019. 5. 3. 피고 F에게 3,300,000,000원을 여신기간만료일 2019. 7. 11., 이자율 연 19.9%, 지연배상금률 22.9%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같은 날 피고 F는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피고 G에게 제1순위 근질권을 설정해주는 내용의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 및 이 사건 주식등담보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주식등담보계약서 전문에는 이 사건

대여와 관련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담보관계를 규정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질권설정자인 피고 F는 이 사건 대여계약일에 H에게 피고 G를 질권자로 하여 질권설정승낙을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질권설정 당시 피고들 사이에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주권반환청구권 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판단

가) 기명주식의 약식질에 관한 상법 제338조는 기명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제1항), 질권자는 계속하여 주권을 점유하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제2항)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식의 질권설정에 필요한 요건인 주권의 점유를 이전하는 방법으로는 현실의 인도(교부) 외에 간이인도나 반환청구권의 양도도 허용되고, 주권을 제3자에게 보관시킨 경우 주권을 간접점유하고 있는 질권설정자가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하여 주권의 점유를 이전하려면 질권자에게 자신의 점유매개자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도하여야 하고, 이 경우 대항요건으로서 그 제3자의 승낙 또는 질권설정자의 그 제3자에 대한 통지를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다34764 판결).

나) 살피건대, 피고 F가 2019. 5. 3. H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주식의 반환청구권을 피고 G에 양도하고, H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통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G은 제3자 대항력을 갖춘 이 사건 질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강행규정 위반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은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등 예탁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1년간의 의무보호예수 상태에서 한국거래소의 승인 없이 질권설정 등 처분을 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2) 판단

증권등 예탁업무규정 제26조의4는 예탁결제원 및 지정예탁자는 보호예수한 증권등에 대하여 예탁자계좌부 및 투자자계좌부상 질권설정·계좌대체 및 반환 등의 처분을 제한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1, 23, 24조에서는 상장 후 매각제한(제21조), 합병 또는 주식교환시의 매각제한(제23조), 감자와 병행 또는 감자 후 1년 이내에 제3자배정 유상증자시 매각제한(제24조)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있고,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3조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하여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발행일로부터 추가상장일 후 6월까지 유상증자에 참여한 자는 배정받은 주식을 계속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각 규정들은 법률 자체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 규정에 위반한 주식양도행위 자체가 그 사법상 효력까지도 부인하지 아니하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거나 그 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여야만 비로소 그 규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각 규정은 단속규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이 위 규정들에 위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무권대리 여부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보조참가인들은,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은 S가 피고 F의 대표이사인 I를 대리하여 체결한 것인데, S는 피고 F로부터 적법한 위임을 받은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G은 S가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 당시 피고F가 작성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적법하게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보건대, 을 제13, 24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F는 2019. 4. ~ 2019. 5.경 피고 G에게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하고, I이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로 연대보증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여신신청을 하여 2019. 5. 2. 피고 G의 여신심의를 받은 사실, 피고

F는 2019. 5. 2. 사내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로 이사회소집절차 없이 이사회를 개최하고, 주주 전원 동의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피고 G에 대한 대출 신청과 이 사건 주식의 담보제공을 각 결의한 사실, S는 2019. 5. 3. 피고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I을 대리하여 피고 G와 사이에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F의 위임장과 법인인감증명서 및 S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위 사내이사 결의서 및 위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제출한 사실, 당시 제출된 위임장에는 '(주)F와 (주)G간의 대출금 차입(33억원) 및 담보제공(L 1,737,588주)에 대한 약정과 관련하여 자서 일체의 모든 권한을 상기 대리인에게 위임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S는 피고 F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받고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 보조참가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원고 A은 J이 이 사건 제1투자계약상의 투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자 2018. 11. 12. 피고 F와 사이에 다른 투자자 3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고 피고 F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제1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 B은 피고 F가 이 사건 제2투자계약상의 투자금과 약정수익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자 2018. 11. 13. 피고 F와 이 사건 제2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이 2019. 5. 3. 체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F는 이 사건 제1, 2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함으로써 피고 F의 투자금반환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차용금채무를 성립시키는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F는, 원고 A에게 원금 3,6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인 2019.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원금 2,756,000,000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인 2019.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F에 대한 위 각 채권은 피고 F의 이 사건 질권 설정 전에 발생한

것이어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G은, 원고들은 피고 F에게 각 거액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체 내역 등 금융거래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는 집행력만 있을 뿐 기판력이 없으므로 공정증서만으로 대여금 채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제1, 2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의하면 모두 이자 약정이 없고, 이 사건 제1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경우 지연손해금 약정조차 없는 점, 원고들이 별다른 담보를 제공받지 않았으며 피고 F가 보유하고 있는 상장회사 주식인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지 않은 점, 원고들은 피고 F가 변제기가 지나도록 상환하지 않고 있음에도 수개월간 별다른 집행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실제 금원을 대여한 적이 없거나 피고 F와 이 사건 제1, 2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1, 2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원고들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 G이 주장하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들만으로 위 각 피보전채권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 당시 피고 F의 무자력 및 사해행위의 성립

가) 갑 제14호증, 갑나 제2, 3호증, 을 제12, 14, 3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송파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2020. 12. 4.자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T에 대한 2020. 6. 5.자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U에 대한 2021. 1. 28.자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V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증인 J의 증언 및 변론 전체를 종합하면,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한 2019. 5. 3. 당시 피고 F는 ① 시가 8,027,656,560원 상당의 이 사건 주식(= 2019. 5. 3. 기준 L 발행 기명식 보통주의 1주당 가액 4,620원 × 1,737,588주)과 피고 F 명의의 T 예금채권 39,212원을 보유하고 있어 이 사건 주식이 피고 F의 사실상 유일한 적극재산인 사실, ② 반면 피고 F는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제1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따른 합계 3,654,443,835원(= 원금 3,600,000,000원 + 지연손해금 54,443,835원(= 3,600,000,000원 × 상사 법정이율 연 6% ×

92/365, 원 미만 버림}} 상당의 채무, 원고 B에 대한 이 사건 제2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따른
합계 2,910,033,972원{= 원금 2,756,000,000원 + 지연손해금

154,033,972원(=2,756,000,000원 × 지연손해금율 연 24% × 85/365, 원 미만 버림}} 상당의
채무, O 등 7인에 대한 7,800,000,000원(= 9,800,000,000원 - 2,000,000,000원1)) 상당의
차용금채무, 소외 주식회사 V(이하 'V'이라 한다)에 대한 차용금 원금 및 이자 합계

2,531,349,315원{= 원금 2,500,000,000원 + 이자 31,349,315원(=2,500,000,000 × 이자율 연
19.9% × 23/365, 원 미만 버림}} 상당의 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는 사실, 따라서 피고 F는 적어도
합계 16,895,827,122원(= 3,654,443,835원 + 2,910,033,972원 + 7,800,000,000원 +
2,531,349,315원) 이상의 소극재산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F는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 체결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나) 피고 G은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과 관련하여, L의 최대주주로서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할 때,
위 평가액은 시가의 약 40%~45%를 이에 더한 약 110억 원에 이르는바,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가액이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고 특히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564 판결 등 참조), L 주식이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가액으로 실제 매각되리라고
기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증거도 없는 이상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가액을 L
주식의 평가액으로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피고 F가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피고 G에게
이 사건 질권을 설정하여 준 것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피고 F와
수익자인 피고 G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3) 피고 G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G은, 피고 F가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 당시 무자력 내지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설령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더라도 피고 F가 피고 G으로부터 3,300,000,000원을 대출받아 기존 채무 약

2,500,00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769,504,000원을 기타 채무 변제 또는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데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등 참조).

다) 보건대, 을 제14, 2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V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U에 대한 2021. 1. 28.자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를 종합하면, 피고 F가 2019. 4. 11. V으로부터 2,500,000,000원을 변제기 2019. 7. 11., 이자율 19.9%, 지연손해금율 22.9%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 피고 F는 2019. 5. 3. 이 사건 대여계약 및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G으로부터 3,30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그 중 약 2,500,000,000원으로 V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모두 변제한 사실, 피고 F는 2019. 4. 12. V으로부터 2019. 4. 11. 차용한 금원 중 일부로 보이는 2,349,000,000원과 2019. 5. 3. 이 사건 대여금 중 일부로 보이는 769,500,000원을 소외 W 주식회사(이하 'W'이라 한다) 명의 U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각 이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F가 위 2,349,000,000원 및 위 769,500,000원을 W에게 각 이체한 것이 피고 F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거나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G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G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G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 G은, 피고 F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고, 피고 F가 이 사건 대여계약 및 이 사건 질권설정 과정에서 V에 대하여 부담하는 약 2,500,000,000원의 채무 외에 다른 채무가 없다고 밝히는 등 그 신용상태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정황이 없었으며, 피고 F가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여기에

가압류 등 제한이 없다는 점을 확약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G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한다.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참조).

3) 살피건대, 을 제6, 15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G이 이 사건 대여금의 대출신청에 관하여 2019. 5. 2. 여신심의를 진행하고 피고 F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현황 및 연체사실 여부 및 국세·지방세에 대한 체납내역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사실, 피고 G은 2019. 5. 3.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 및 이 사건 주식등 담보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F로부터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현재 및 향후 권리제한 통지나 행위가 없다는 것을 확약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위 증거들과 갑나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F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2018. 8. 14.자로 피고 F의 부채총액을 9,800,000,000원으로 공시하였고 이는 2019. 5. 13.자 공시까지 변동이 없었는데, 피고 G이 2019. 5. 2. 개최한 여신심의자료에는 피고 F의 부채총계가 2018년 기준 115,577,500원으로 기존 공시자료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여신심의서에는 피고 F의 당해사업연도의 영업손실액이 4,559,128,599원, 직전사업연도의 영업손실액이 5,889,742,547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8년 기준 부채총계는 115,577,500원, 자본총계는 7,713,805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면 피고 G은 이 사건 대여금의 대출 및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에 있어 피고 F의 재무상태와 변제 자력에 대하여 불충분 또는 부실한 심사를 진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는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 G이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G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의무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 G은 피고 F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H의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에 한 질권 설정을 마친 질물인 뜻과 질권자의 기재에 대한 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미리, 판사 유성희, 판사 소준섭

별지

예탁유가증권

주식회사 F가 본인 명의의 증권계좌 등을 통하여 예탁자인 H 주식회사의 고객으로서
가지는 다음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예탁주권에 관한 공유지분

- 다 음 -

1. 주식 발행회사 : 주식회사 X

주식 종류 및 수량 : 기명식 보통주 1,737,588주

2. 제1항의 주식에 관하여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 회사의 합병, 무상증자(주식배당) 등
이 이루어져 새로이 주식이 발행된 때에는 그 새로이 발행된 주식

3. 제2항의 주식에 관하여 다시 제2항에 든 사유에 의하여 새로이 주식이 발행된 때에
는 그 새로이 발행된 주식, 끝.

1) 원고 B은 피고 F에게 이 사건 주식인수대금으로 2,000,000,000원을 투자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O 등의 7인에 원고 B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B에 대한 원금채무를 위 O 등 7인의 채무에서 제외한다.